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84

발의연월일: 2023. 2. 13

발 의 자:위성곤·김성환·신정훈

김승남 • 어기구 • 송재호

윤준병 • 이개호 • 안호영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마약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이하 "봉사동물"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의 전부개정(2023. 4. 27. 시행 예정)으로 국가가 소유한 봉사동물에 대하여는 마릿수 및 해당 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음.

봉사동물은 연간 천여 마리로 추정되고 있는데, 노령과 질병 등으로 퇴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적절한 보호·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나, 이 들의 사회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 정임.

한편, 다른 법률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경주마 등이 퇴역한 이후 이들에 대한 학대, 불법 도축행위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매년 1,300마리 이상의 말이 퇴역하고 있는 가운데 승용, 번식용 외에 용도 미정으로 분류되는 퇴역마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적정한 보호·관리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봉사동물과 경주마 등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절한 사육 및 관리의무 준수, 기증과 분양 등 각 동물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적정한 보 호·관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등을 위하 여 봉사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한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법률 제16조의2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봉사동물 등에 대한 보호·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동물의 소유자등은 해당 동물이 본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도 적절한 사육 및 관리의무 준수, 기증과 분양 등 각 동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 관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 1.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
- 2.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주마
-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등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 ③ 행정각부의 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비, 치료비, 기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일부 |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일부 |
| 개정법률 | 개정법률 |
| <u> <신 설></u> | 제16조의2(봉사동물 등에 대한 |
| | 보호·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
| | 동물의 소유자등은 해당 동물 |
| | 이 본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 |
| | 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절한 사 |
| | 육 및 관리의무 준수, 기증과 |
| | 분양 등 각 동물에 따라 농림 |
| |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 | 과 방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 |
| | 관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여 |
| | <u>야 한다.</u> |
| | 1.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 |
| | 2.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2 |
| | 호에 따른 경주마 |
| |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의 소유 |
| | 자등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 |
| |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
| |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 |
| | 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 |
| | 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
| | 을 준용한다. |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01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신 설>

② ~ ⑤ (생 략)

| ③ 행성각무의 상관, 특별자지 |
|------------------|
|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
|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비, 치 |
| 료비, 기타 복지 증진을 위해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
|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
| 있다. |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자 ② ~ ⑤ (현행과 같음)